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·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정읍시	심의일자	2026. 6. 19.	
건축종별	[] 신축,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정읍시(체육진흥과)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정읍시 상평동			
	지번 56-2번지 일원	관련지번 (상평동 56-2번지 일원)		
	대지면적 139,607.1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673.07㎡	건폐율 1.1984 %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1층	
	주용도 운동시설	구조 일반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 동	
	최고높이 8.4m	용적률 1.1984%	연면적 합계 1,673.07 ㎡	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	
(구조)분야	(권고사항) 처마 끝단에 열선을 설치하는 방법 검토			
심의결과	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근거조문				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 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 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		
작성방법				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				